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6. 3 선고 2019가단677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국제

담당변호사 황주환

변론 종결 2020. 5. 13.

판결 선고 2020. 6. 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소외 C는 2016. 7. 6. 사망하였는데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, 원고는 그 상속인 중한 명이다.

나. 망인은 사망 전인 2015. 8. 26.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부산 남구 E 대 231㎡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500,333,729원을 수령하였다.

다. 망인은 2015. 8. 26. 위 보상금을 상속인 중 한 명인 소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(G)에 입금하였다. 이후 2015. 8. 31.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,000,000원이 자기앞수표 2매(200,000,000원권 및 300,000,000원권)로 출금되었고, 위 자기앞수표 중 200,000,000원권 수표가 2015. 8. 31. F 명의의 우체국 계좌(H)로 입금되었다가, 2016. 6. 10. 다시 200,000,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다음, 망인의 사망 후인 2016. 7. 12. 피고명의로 KEB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(이하 피고 명의 계좌로 최종 입금된 위 200,000,000원을 '이 사건 금원'이라 한다).

라.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914호로 위 F를 상대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이상의 금원을 F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그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18. 10. 17.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면서,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해약되었고, 망인이 F 명의의 다른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우체국 계좌 또한 관리·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F가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(부산고등법원 2018나57653), 2019. 6. 10. 항소가 기각되었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: 갑 제1, 2,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 F로부터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,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0,000,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망인 또는 F 둘 중 한 명과의 어떤 법률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,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그 법률관계가 단순한 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.

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망인이 아닌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, 원고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, 피고는 그 수사 과정에서 F와는 아무 사이도아니고 망인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, 달리 F가 피고에게 이 사건금원을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가 F를 위하여 이 사건금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.

설령 피고가 망인이 아닌 F와 사이의 임치 등 법률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 하더라도,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, 위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·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세진